

# 일본의 여행정보업 규제

● 신청기관: (주)맥스컨설팅

## I. 서론

일본표준산업분류<sup>1)</sup>에 의하면, 여행정보업종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행정보제공자가 여행자에게 유용한 여행정보를 생산, 판매하는 업종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여행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시행 중인 여행정보업과 관련한 규제법제로는 여행업법<sup>2)</sup>과 국토교통성 고시에 의한 표준여행업약관(이하에서는 '표준약관'이라 한다)<sup>3)</sup>이 있다. 여행업법은 국가와 여행업자와의 법적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규정한 것이다.<sup>4)</sup> 현행 일본 여행업법<sup>5)</sup>은 1952년 「여행주선업(법률 제239호)」에 기초한 것이고,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

1)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angyo/H25index.htm](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angyo/H25index.htm) (2015. 07. 20. 방문).

2) 제정 1952년 법률 제239호, 최근개정 2011년(법률 제74호).

3) 제정 국토교통성 고시 제1593호, 최근개정 2014년(소비자청관광청고시 제1호).

4) 일본의 여행업법 및 표준여행업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08, 58면 이하 참조; 島十四郎, 「旅行あつ旋契約(手配旅行契約)・主權旅行契約」, 『現代契約法大系』 第7卷, 94頁 以下; 高橋 弘, 「旅行業約款 - 主權旅行契約を中心として」, 『法律時報』 第54卷 第6號, 日本評論社, 24頁 以下 参照.

5) 현행 일본 여행업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여행업(제3조~제22조) 제3장 여행업협회(제22의2~제22조의 24) 제4장 잡칙(제23조~제27조) 및 제5장 벌칙(제28조~제3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 第19号, 2012年, 2頁 以下 参照; 상세한 조문 참조는 <http://www.jata-net.or.jp/membership/> (2015. 7. 20. 방문).

을 거쳐 최근 2011년에 개정됐다.<sup>6)</sup> 1952년 당시, 「여행주선업」은 등록 및 영업보증금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로 국민의 여행참가가 증가하고 여행업계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각종의 여행서비스를 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바뀔에 따라, 단속법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에 거래법적인 성격을 가미한 여행업법으로 개칭하여 시행되어 왔다.<sup>7)</sup> 다만, 여행업법에서는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규정이나 여행서비스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한 여행업자의 계약책임 등에 대해 직접 규정을 두지 않고, 표준약관에 맡기고 있다(제12조의2, 3). 국토교통대신이 표준약관을 정해 공시한 경우에 여행업자가 표준약관과 동일한 여행업약관을 정하거나 또는 실제 정한 여행업약관을 표준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한 때는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준약관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국가와 여행업자와의 법률관계를 여행업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고, 여행자와 여행업자와의 거래관계는 표준약관<sup>9)</sup>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여행업법과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여행업등록 및 영업보증금제도를 포함한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근 2015년 1월 12일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재산권 분야에서 최초로 새로운 계약형태로서 ‘여행계약’이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신설<sup>10)</sup>되었다. 이와

- 
- 6) 일본 여행업법의 변천과정 및 개정배경에 따른 상세한 내용으로는 森住正明, 「旅行契約の特殊性と旅行業法に関する一考察」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5号, 2009. 12, 61頁 以下 参照; 廣岡裕一, 「旅行業法の變遷 - 旅行業法に改題後の1982年と1995年の改正-」, 『政策科學』 13-1, 2005. 10, 107頁 以下 参照.
  - 7) 佐々木正人, 「旅行の法律學」, 日本評論社, 1996, 2~3頁.
  - 8) 拙稿,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08, 60면.
  - 9) 종래 여행계약에 관해서는,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작성하여 권장한 ‘모텔약관’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 후, 여행거래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약관의 규제의 필요를 느껴 1979년 운수성 관광부에 여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약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약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여 1983년 초에 여행업제도검토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제출한 ‘표준여행업약관’안을 승인하고, 1983년 2월 14일 운수성이 이 표준여행업약관을 공시하고(운수성고시 제59호), 같은 해 7월 1일 이후의 주최여행에 이를 적용하였다.
  - 10) 우리나라는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으로, 2001년 11월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민법개정안을 2014년 3월 25일 법무부가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롭게 민법개정 작업을 거쳐 제19대 국회에 제출하여,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여행계약이 민법의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신설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은 민법 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 총8개 조문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에 의의 규정부터 시작하여 여행개시전 여행자가 여행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여행의 하자에 대하여는 여행자가 시정조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거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여행주최자가 알려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여행자의 해제권도 보장하였다. 또한 해외여행 중 부모의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비용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민법규정과 다른 약관 또는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였다.

는 별도로 여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행업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행업법안<sup>11)</sup>이 2013년 3월 4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여행업법안에 대한 입법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일본의 여행업 등록제도의 개요

### 1. 여행업의 등록제도

일본 여행업법의 제정목적은 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공정의 유지, 여행안전의 확보, 여행자의 편리증진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제도의 실시, 여행업무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의 적정한 활동의 촉진 등 3가지의 입법목적<sup>12)</sup>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그에 관한 제규정이 정비되어 있다(여행업법 제1조).<sup>12)</sup> 따라서 여행업법에서는 보수를 받고 여행자를 위해 운송·숙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를 하는 행위 등을 실시하는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행정청으로 국토교통대신 또는 관광청, 도도부현 지사에게 여행업 또는 여행업자 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 2. 여행업 등록구분 및 취급업무의 범위

여행업종의 구분은 업종을 제1종, 제2종, 제3종, 지역별 여행업 및 여행업자 대리업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능을 살펴보면, 제1종 여행업은 국내·외 모집형 기획여행<sup>13)</sup>, 수주형 기획여행<sup>14)</sup>, 수배여행<sup>15)</sup>, 업체모집형 기획여행 요금매도<sup>16)</sup> 등 모든 여행계

11) 여행업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03. 14) 제안이유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2015. 08. 03. 방문).

12)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 第19, 2012年, 2頁 参照.

13) 여행사가 미리 목적지·일정 등의 여행 내용이나 여행 대금을 정한 여행 계획을 만들고 팸플릿·광고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 여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패키지 투어 또는 팩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제2종 여행업은 해외모집형 기획여행 이외의 모든 여행계약을 취급할 수 있고, 제3종 여행업은 해외, 국내를 불문하고 자사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별 여행업은 관광자원의 활용과 다양화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에서 이른바, ‘착지형 여행상품’<sup>17)</sup>을 제공하는 여행업을 말하며, 여행업자 대리업은 타사의 여행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업종별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제1조의2).

〈표 1〉 여행업의 등록구분

종류	업무 범위	등록 행정청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수배여행계약		업체모집형 기획여행 요금매도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제1종 여행업		관광청	◎	○	◎	○	◎	○	◎	○
제2종 여행업		도도부 현지사	×	○	◎	○	◎	○	◎	○
제3종 여행업			×	△ 주1)	◎	○	◎	○	◎	○
지역별 여행업			×	△ 주1)	×	△ 주1)	×	△ 주1)	◎	○
여행업자 대리업			모집형 기획여행을 제외하고 소속 여행사에서 위탁한 업무							

- ※ 주1) 기획여행 및 수배여행의 출발지역이 당해 사업자의 한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정촌(도쿄도의 특별구를 포함)과 인접 시정촌 등의 범위에서 업무를 취급함.
- ※ 주2) 도도부 현 지사 등록은 여행업자 등의 ‘주된 영업소(여행업무의 거점이 되는 영업소)’을 관할하는 현 지사가 함.
- ※ 주3) 「◎」 표시는 해외업무를 할 경우,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함.

- 14) 여행사가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일정 등의 여행 내용이나 여행대금을 정한 여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여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이 이에 해당한다.
- 15) 여행자를 위한 또는 운송기관과 숙박시설 등을 위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리계약을 체결, 중재 또는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JR티켓, 항공권, 숙박권 등의 예약·준비가 이에 해당한다.
- 16) 타사가 주최하는 패키지투어와 패키지여행을 다른 여행사가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 17) 착지형 여행은 여행객을 수용지역측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여행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여행형태를 말한다.

### 3. 여행업의 등록거부

여행업등록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6조).

- ① 법 제19조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여행업 또는 여행업자 대리업의 등록을 취소당하고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해당 등록을 취소당한 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취소와 관련한 청문 기일 및 장소의 공시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임원인 자로, 해당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 ② 금고 이상에 처해지거나 이 법률규정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신청 전 5년 이내에 여행업무에 관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④ 영업에 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전 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 성년 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⑥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전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⑦ 영업소마다 여행업무 취급관리자를 확실히 선임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⑧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기획여행<sup>18)</sup>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부, 기타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업무범위마다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산을 갖지 못한 자, ⑨ 여행업자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그 대리하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에 등록이 거부된다.<sup>19)</sup>

### 4. 영업보증금제도

영업보증금제도는 여행업협회의 정회원 이외의 여행업자와 여행업무에 관해서 거래를 한 여행자가 그 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에 대해서, 여행업자가 국가에 공탁한 영업보증금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여행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를 말한다.<sup>20)</sup>

18)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서비스(이하 '운송 등 서비스'라 함)의 내용 및 여행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여행자의 모집을 위해 미리 또는 여행자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작성함과 동시에, 해당 계획에 정한 운송 등의 서비스를 여행자에게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운송 등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자기계산 하에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간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을 의미한다(법 제2조).

19) <https://www.jata-net.or.jp/membership/industry/notification/application/1.html> (2015. 08. 20. 방문).

20) <http://www.mlit.go.jp/kankoch/shisaku/sangyou/ryokogyoho.html> (2015. 08. 20. 방문).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해당 여행업자가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으로부터 여행대금 등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변제청구액의 합계금액이 영업보증금 액수를 넘을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액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액에 응해서 안분한다.<sup>21)</sup>

아울러, 여행업 등록 시 기준자산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의한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에 관한 조서에 근거해 산출한다. 업종별 기준자산, 영업보증금 또는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법 제7조~제10조).

〈표 2〉 업종별 기준자산, 영업보증금

업종별	기준자산	영업보증금 (여행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 (여행업협회회원사인 경우)
제1종 여행업	3,000만 엔 이상	7,000만 엔 이상	1,400만 엔 이상
제2종 여행업	700만 엔 이상	1,100만 엔 이상	220만 엔 이상
제3종 여행업	30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상	60만 엔 이상
지역별 여행업(신설)	100만 엔 이상	100만 엔 이상	20만 엔 이상
여행업자 대리업	없음	불요(不要)	

※ 주1) 기준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자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격과 다른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평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함(예: 부동산·유가증권 등)

※ 주2) 신설회사의 경우 또는 설립하고 첫 결산기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19조 제2항 및 상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업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계산함

## 5.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선임

여행업자 또는 여행업대리업자는 영업소별로 ‘여행업무 취급관리자’를 선임해서 해당 영업소의 여행업무를 총괄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거래에 관련된 거래 조건의 명확성, 여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의 확실성, 그 외의 공정한 거래, 안전한 여행 및 여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할 의무가 있다.<sup>22)</sup>

21) 영업 보증금의 공탁 변제 업무 및 보증금 분담금의 납부 신고 신청 안내와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http://www.pref.osaka.lg.jp/annai/menkyo/detail.php?recid=10236&sin\\_recid=15325](http://www.pref.osaka.lg.jp/annai/menkyo/detail.php?recid=10236&sin_recid=15325) (2015. 08. 20. 방문).

22) 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吉川道雄, “旅行業法と旅行業及hび旅行業務取扱主任者試験に関する諸問題”, 第一經大論集 第23卷 第1號, 61頁 以下 參照.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ryokogyoho.html> (2015. 08. 20. 방문).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자격으로는 국내여행 업무만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있어서 종합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시험 또는 국내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한편 여행업자는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에 대해 업무관련 필요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종사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여정관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또 여행의 목적지를 감안해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여정관리업무의 실무경험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여행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무로는 ① 여행에 관한 계획의 작성 ② 여행업약관의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사항 ③ 거래조건 설명에 관한 사항 ④ 여행계약에 관한 서면교부에 관한 사항 ⑤ 기획여행의 광고에 관한 사항 ⑥ 기획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여행의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⑧ 계약체결의 연월일, 계약의 상대방 기타 계약내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명확한 기록 또는 관계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6. 여행업무 취급요금의 게시

여행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행자로부터 수수하는 여행업무 취급요금(기획여행과 관련한 것은 제외)이 여행계약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정률, 기타 방법에 따라 정하고(시행규칙 제21조), 이를 영업소에서 여행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여행업자대리업자도 영업소에서 소속 여행업자가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한 요금을 여행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법 제12조), 여행업무 취급요금에 따른 여행자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 Ⅲ. 일본의 표준여행업약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체결하는 여행업무취급에 관한 계약에 관해 여행업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대신은 여행업약관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① 여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② 적어도 여행업무의 취급요금, 기

타 여행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금전의 수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및 여행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기획여행계약과 수배여행계약, 기타 기획여행계약 이외의 계약에 따라 명확히)정해져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여행업자 및 여행업자대리업자는 여행업약관<sup>23)</sup>을 영업소에서 여행자가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또는 여행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12조2 제3항). 또한 국토교통대신이 표준약관을 정해 공시한 경우(이를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를 포함)에 여행업자가 표준약관과 동일한 여행업약관을 정하거나 또는 실제 정한 여행업약관을 표준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한 때는, 그 여행업약관에 대해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준약관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 1. 표준여행업약관의 구성

표준약관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수배여행계약의 부, 여행수속대행계약의 부, 여행상담계약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표준여행업약관의 구성

구분	내용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여행자의 모집을 위해 미리 여행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여행업자에 지급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계약(패키지여행)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여행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여행업자에 지불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해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계약(단체여행, 수학여행 등)
수배여행계약의 부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여행자를 위해 대리, 매개 또는 중개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의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수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항공권, 숙박 단품)

23) 여행업 대리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여행업자의 여행업약관을 의미하고, 수탁여행업 대리업자가 다른 여행업자를 대리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외의 여행업자의 여행업약관을 의미한다.



구 분	내 용
여행수속 대행계약의 부	여행수속대행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①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②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③ 기타 전 각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여권발급 절차 등)
상담계약의 부	상담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① 여행 자가 여행계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언 ② 여행계획 작성 ③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④ 여행지 및 운송·숙박 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⑤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 공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상담 등)

## 2.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 내용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행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단체·그룹계약, 일정관리,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책임, 영업보증금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여행자는 언제든지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취소료를 여행업자에게 지급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및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해외여행의 경우 표준약관의 취소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규정(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예)

구 분	취소료
일본 출국시 또는 귀국시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a. 여행개시일이 피크 시의 여행일 경우에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4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b부터 d까지 열거하는 경우 제외)	여행 대금의 10%이내
b.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및 d에 열거하는 경우 제외)	여행 대금의 20%이내
c. 여행개시일의 전전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에 열거하는 경우 제외)	여행 대금의 50%이내
d.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 대금의 100%이내
주1) 「피크 시」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또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함 주2)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하여야 함	

아울러,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업자에게 여정보증제도와 특별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여정보증제도<sup>24)</sup>라 함은, 여행업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계약서면에 기재한 중요한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은 제외)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변경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특별보상제도<sup>25)</sup>라 함은, 여행업자에게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여행자가 기획여행 중에 급격,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 생명, 소지품의 피해를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sup>26)</sup>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상금의 지급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특별보상금의 지급내용(요약)

구분	손해의 내용	국내여행의 경우	해외여행의 경우
신체손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500만 엔	2,500만 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위의 금액의 3% ~ 100%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2만 엔 ~ 20만 엔	입원기간에 따라 4만 엔 ~ 40만 엔
	3일 이상 통원한 경우	통원일수에 따라 1만 엔 ~ 5만 엔	통원일수에 따라 2만 엔 ~ 10만 엔
수하물 손해	여행자 한명 당, 하나의 기획여행에 대해 15만 엔을 한도로 함 (단, 여행자 한명 당, 일회의 사고에 대해서 3,000엔을 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음.)		

24) 여행업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미리 규정에서 제외되는 변경을 제외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일정한 변경보상금을 여행업자가 지불하는 제도가 여정보증제도로서, '여행 개시일 또는 종료일의 변경', '입장하게 되어 있는 관광지, 관광시설, 사용예정을 하고 있던 레스토랑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시설의 낮은 요금의 것에 대한 변경',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출발 또는 도착지의 변경', '투어 제목 중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등 변경보상 대상항목이 지급 한도액과 동시에 정해져 있다.

25) 특별보상규정은 여행업자의 책임에 대한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기획여행참가 중 여행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상에 대한 여행업자측의 지급책임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덧붙여,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및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지진, 분화 또는 해일'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26)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http://www.kokusen.go.jp/wko/pdf/wko-201303\\_01.pdf](http://www.kokusen.go.jp/wko/pdf/wko-201303_01.pdf). (2015. 08. 29. 방문).

## IV. 시사점

여행정보업을 여행정보제공자가 여행자에게 유용한 여행정보를 생산, 판매하는 업종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여행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 법령상의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정보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여행정보업과 관련한 규제법제로서, 여행업법에서의 여행업 설립기준에 해당하는 여행업등록 및 영업보증금제도를 포함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의 내용과 여정보증 및 특별보상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국가와 여행업자와의 법률관계를 여행업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고, 여행자와 여행업자와의 거래관계는 표준약관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여행계약’이 2015년 1월 민법의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신설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여행업법안이 2013년 3월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여행업법안에 대한 입법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에서는 여행업의 업종구분과 관련하여 현재 5종의 등록유형에 대한 취급업무가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여행업의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업종유형에 대한 의미가 점차적으로 약화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요청이 있다.<sup>27)</sup> 우리나라의 여행업법안 제4조에서는 여행업의 종류를 종합여행을 제공하는 업종과 전문여행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여행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는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으로만 업종을 나누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업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여행업협회 회원사 여부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만큼, 일본여행업협회와 일본전국여행업협회가 여행업계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업종별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sup>28)</sup>, 한국여행업협회<sup>29)</sup>에 공제가입 및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

27) 森住正明, 「旅行業約款の規定と WEB 上の表示について」,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6号, 2011. 3, 65頁 以下 参照.

28)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업계전반 의견조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협조로 관광 발전도모, 관광산업 진흥기여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3년 3월 11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29) 한국여행업협회는 내·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무의 개선 및 서비스 향상도모, 회원 상호간 연대협조, 여행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을 위해서 1991년 12월 21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며, 2010년까지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것이 2011년부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 여행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업법안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보험과 관련하여 일본의 영업보증금제도를 참조하여 협회의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행업 취급수수료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여행업무취급에 대한 자세한 기준 요금표를 여행업계 공통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0)</sup> 우리나라의 여행업법안은 여행업자가 제공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여행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4조). 그리고 여행업자가 취급수수료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21조).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당하고 과다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행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여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여행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여행업법안은 필요한 입법이라 보여진다.<sup>31)</sup>

넷째, 일본에서는 여행업에 등록하고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반드시 영업소마다 1인 이상의 여행업무 취급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본과 같은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와 같은 여행업무 전반에 걸친 전문자격 등이 없는 실정이나, 여행업법안 제27조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와의 여행계약 이행확보, 여행자의 안전확보 및 여행자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소에 여행업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행업무관리자에 대한 업무범위의 해석이 다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하위법령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규율한 “여행계약”이 최근 2015년 1월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신설되고, 이와 같은 민법규정과 다른 약관 또는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민법 제674조의9)을 두어 그 실효성을 담보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한 여행문화가 확립되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행자와 여행업자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여행계약의 민법전 편입과는 별도로 입법자로 하여금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조화라고

30) 일본의 여행업무취급요금의 기준은 계약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정률, 정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여행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31) 류환민, 「여행업법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 11, 7면 참조.; 박명수, “여행업법안 검토보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5면 이하 참조.

하는 고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적 결함이 있더라도 그 파장효과가 크지 않아 신속한 입법이 요청되는 경우에 입법자로 하여금 비교적 수월하게 입법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sup>32)</sup>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행업종의 전문화와 위상강화 측면에서 여행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박재훈**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32) 김진우,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논집』 제2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170면;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예의 통합”, 『민사법학』 제39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219면.

#### 참고문헌

- 김진우,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논집』 제2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류환민, 『여행업법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
- 박명수, “여행업법안 검토보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 박재훈,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법무부, 『여행자 권리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 공청회』, 2013.
-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예의 통합”, 『민사법학』 제39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佐々木正人, 『旅行の法律學』, 日本評論社, 1996.
- 高橋 弘, 「旅行業約款-主催旅行契約を中心として」, 『法律時報』 第54卷 第6號, 1982.
- 廣岡裕一, 「旅行業法の變遷 - 旅行業法に改題後の1982年と1995年の改正-」, 『政策科學』 13-1, 2005.
- 島十四郎, 「旅行あつ旋契約(手配旅行契約)·主催旅行契約」, 『現代契約法大系』 第7卷, 1985.
- 森住正明, 「旅行契約の特殊性と旅行業法に関する一考察」,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5号, 2009.
- \_\_\_\_\_, 「旅行業約款の規定と WEB 上の表示について」, 『東京交通短期大学 研究紀要』 第16号, 2011.
- 日本旅行業協 (JATA) 『旅行業法, 約款例解説』, 2000.
- \_\_\_\_\_, 『數字が語る旅行業 2013』, 2013.
- \_\_\_\_\_, 『數字が語る旅行業 2014』, 2014.
- 香取幸一, 「旅行業法と規制緩和に関する一考察」, 『玉川大学経営学部紀要』 第19号, 2012.





Japan

